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1호로 2023년 3월 16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예산의 이월 및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특별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3. 8. ~ 2023. 3. 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이월사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발전소는 없지만, 인근 양천구와 마포구에 소재한 발전소가 우리 구에서 5km 이내에 위치하여 2015년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음.

연번	주관기관	사업소	발전원	발전소소재지	가동중설비용량(MW)	지원사업시행자	배분금액(천원)
1	서울에너지공사 (구.SH공사)	목동열병합발전소	가스	양천구	21	영등포구	5,600
2	한국중부발전(주)	서울건설본부 (구. 서울화력)	가스	마포구	800	영등포구	44,900
3	노을그린에너지 (주)	노을연료전지발전소	연료전지	마포구	20	영등포구	1,700
4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연료전지)	연료전지	마포구	6	영등포구	2,000

-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